

— 施設保護 母子家族을 中心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Role Functions of Fatherless Families Required Protection in Korea-

金 仁 淑

(한국지역사회학교 후원회 간사)

I. 序 論

1. 研究의 背景 및 目的

現代는 核家族의 出現으로 家族의 生計를 責任지는 世代主와의 不慮의 死別이나 離別이 母子家族의 出現傾向을 增加시키고 있다.¹⁾ 우리나라의 境遇 母子世帶의 比率는 總家口數의 約 9%에 이르고 있으나, 實際의 母子家口數는 每年 增加趨勢에 있다. (1979年: 679,219世帶, 1980年: 707,091, 1981年: 725,142, 1982年: 735,020) 특히 이들 母子家口數에 對한 要保護母子家口의 比率는 1979年 8.2%(55,905世帶), 1980年 9.3%(65,746), 1981年 9.8%(71,238), 1982年 9.9%(73,149)로 亦是 每年 增加趨勢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그러나 이러한 要保護母子家口의 增加傾向에 反해, 이들을 收容保護해야 할 母子保護施設(母子院)의 數는 1977年 全國 36個所에서 1982年 現在 32個所로 減少한 實情이고, 이에따라 施設收容者數도 1976年の 839世帶에서 1982年 現在 766世帶로 減少한 實情이다.³⁾ 또한 施設長들과의 電話인터뷰 結果, 母子家族을 위한 施設保護의 供給은 需要의 $\frac{1}{3}$ 程度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施設保護는 집세라는 큰 負擔을 덜어줌으로써 그 自體만으로도 要保護母子家族의 經濟的 自立을 援助하는 役割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家族은 經濟的問題 外에도, 이로 因한 機能上的 多樣한 問題들 - 子女 養育, 子女教育, 子女들의 同一視 對象의 喪失,⁴⁾ 情緒的, 社會的, 醫療的 問題,⁵⁾ 子女의 非行化 問題⁶⁾ 등 -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要保護母子家族의 正當的인 社會的 機能遂行을 이루게 할 수는 없다.

이와같이 家族의 構造的缺損은 家族의 機能上的 問題에 影響을 끼치며 또한 機能上的 問題를 발생시키게 된다.⁷⁾ 그러므로 H.M. Leyendecker가 公的扶助

* 84년 2월 서울대 석사학위논문의 요약임.

缺損된 要保護母子家族의 機能的問題를 科學的으로 診斷, 分析하는 것이 必要하다.

이러한 診斷과 分析을 위해 本研究는 家族問題에 관한 諸分析接近-構造的 分析, 機能的分析, 關係的分析, 社會·經濟的條件分析, 力動的分析⁹⁾-中 心理學, 社會學, 社會心理學, 組織學, 行動科學, 社會事業¹⁰⁾ 등 여러 社會科學 分野에서 活用되는 主要 概念이면서, 家族問題의 機能的分析 接近에 使用되는 役割(role) 概念을 使用하고자 한다.

이는 本論文의 研究對象인 要保護母子家族 특히 施設保護母子家族은 무엇보다도 家族內에서 重要的 役割-扶養者로서의 役割, 남편으로서의 役割, 아버지로서의 役割-을 擔當했던 父를 喪失함으로써 여러가지 어려운 狀況에 直面하게 되며, 役割構造上의 變化를 가져와 再調整이 不可避하고, 家族成員間의 心理的, 情緒的 關係와 役割構造의 再調整 및 適應過程에서 緊張이 따르게 된다고¹¹⁾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本研究는 특히 役割概念을 構成하는 諸要素 中에서 家族成員間의 相互慾求不滿의 누적상황으로 이끌 수 있는 役割期待와 役割遂行의 差異(GAP)를 特定 役割領域을 對象으로 測定해 봄으로써 母와 子女 間의 役割機能을 分析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本研究의 目的은 첫째, 役割概念에 理論的 根據를 두고 우리나라 施設保護母子家族의 子女指導 및 教育領域, 家事活動領域, 그리고 情緒活動領域에서의 役割期待와 役割遂行의 相違를 中心으로 이들의 役割機能을 調査·分析하고 둘째, 이 分析의 結果를 根據로 하여 施設保護母子家族에 對한 機能的 側面에서의 社會事業的 接近方向을 提示하고자 하는데 있다.

2. 研究의 方法 및 限界

本 研究는 要保護母子家族中 施設(母子院)에 收容되어 保護받고 있는 母子家族의 役割機能 分析을 위해 關心의 領域과 狀況을 體系的으로 描寫하는 記述的 研究(descriptive study) 方法을 사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文獻研究와 질문서를 使用한 調査研究를 並行하고자 한다.

標本이 되는 母子院의 選定은 社會복지기관총람에 수록된 서울所在 7個 母子院(영락, 창신, 동광, 수궁, 해방, 성심, 평화 모자원)을¹²⁾ 母集團으로 흡수 번째에 該當되는 4個 母子院(영락, 창신, 해방, 평화 모자원)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世帶選定은 選定된 4個 母子院에 收容되어 있는 世帶中에서 7個 母

世帶)를 抽出하였다. 여기서 世帶選定の 基準은 有意的 포집방법 (purposive sampling)을¹³⁾ 使用해 母의 연령은 代表性이 크게 나타난 31~49歲¹⁴⁾로 첫째 자녀의 연령은 母子院에 入所可能한 子女의 최고연령 및 最高 入所期間 그리고 質問收容에 대한 이해와 응답의 能力을 考慮한 만 11~15歲인 子女를 가진 母子家族으로 限定했다.

本 調査研究의 質問紙에서 使用한 尺度는 評級尺度 (rating scale)로서 Likert 타일의 5點 尺度 (5 points scale)인데, 이중 役割期待 測定에 使用한 尺度는 최희선이 「夫婦의 役割期待와 그 適應에 관한 研究」에서 使用한 MRE (marriage expectation scale)의 形態를¹⁵⁾ 빌었고, 役割遂行의 測定에 使用한 尺度는 이은순이 「아버지 役割에 관한 父-子女間의 상관연구」에서 使用한 尺度의 形態를¹⁶⁾ 빌은 것이다.

測定된 役割期待와 役割遂行의 程度에 대한 評價를 위해서 役割領域 및 側面 모두에서 각각 아주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아주낮다의 5個의 評價基準을 使用했으며, GAP (役割期待와 役割遂行의 差異를 말한다)의 數値들에 대한 比較를 위해서는 各 役割領域 및 側面の 最高絕對值의 等間을¹⁷⁾ 20等間으로 나누어 各各 表記하였다. 이들 各 基準數値와 等間 및 表示方法은 다음과 같다.

1. 側面別

1.00 ~ 1.80	아주낮다 (X)
1.81 ~ 2.60	낮 다 (△)
2.61 ~ 3.40	보통이다 (△)
3.41 ~ 4.20	높 다 (○)
4.21 ~ 5.00	아주높다 (◎)

2. 領域別

4.00 ~ 7.20	아주낮다 (X)
7.21 ~ 10.40	낮 다 (△)
10.41 ~ 13.60	보통이다 (△)
13.61 ~ 16.80	높 다 (○)
16.81 ~ 20.0	아주높다 (◎)

< 役割期待와 役割遂行의 相違程度 >

1. 側面別

0.00 ~ 0.20	: 1
0.21 ~ 0.40	: 2
0.41 ~ 0.60	: 3
0.61 ~ 0.80	: 4
0.81 ~ 1.00	: 5
1.01 ~ 1.20	: 6
⋮	
3.81 ~ 4.00	: 20

2. 領域別

0.00 ~ 0.80	: 1
0.81 ~ 1.60	: 2
1.61 ~ 2.40	: 3
2.41 ~ 3.20	: 4
3.21 ~ 4.00	: 5
4.01 ~ 4.81	: 6
⋮	
15.21 ~ 16.00	: 20

本 研究의 限界는 다음과 같다.

첫째, 要保護母子家族의 役割機能上的 問題를 밝히기 위해 構造的으로 完全한 一般母子家族이나 居宅保護母子家族과의 比較研究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單一研究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과의 比較評價가 아닌 施設保護母子家族에 대해 測定된 領域間에서의 役割期待와 役割遂行 및 그 差異의 程度만을 比較하여 記述한다는 점과 둘째, 家族問題에 對한 諸接近方法中 機能的分析 方法의 하나인 家族機能의 役割機能만을 中心으로 研究가 이루어 진다는 점이며, 셋째, 施設保護母子家族의 母와 子女가 들의 관계상 갖게되는 期待 自體의 合理性(legitimate)에 對한 檢討가 除外된다는 점이다.

II. 理論的 背景

1. 要保護母子家族의 定義

家族은 社會的 共同生活의 基本單位로서 夫婦間의 性慾充足, 子女生産 및 養育, 經濟的 協助, 子女의 社會化¹⁸⁾ 등의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 그러나 社會事業과 관련한 家族에 對한 見解는 이러한 一般的인 것과는 다르다. 張仁協教授는 Tinker, Nathan, Ackerman 및 Otto Pollark의 家族에 對한 概念들을 살펴본 後, 이들 概念에서 共通的이고 特徵的인 要素를 言及했다. 즉, 첫째 家族이란 生命構造 그 自體에 行動規制를 갖는 하나의 體系(system)라는 점과 둘째, 家族은 하나의 心理的 統合體로서 個人과 家族間에는 密接한 相互體系가 存在해 있다는 점과, 특히 무엇보다도 그 機能을 中心으로 하는 適應能力面이 重要하다고 했다.¹⁹⁾

家族의 機能遂行은 家族의 構造的 缺損과 關係가 있다고 보는데, 이는 構造的 缺損으로 因해 家族의 機能遂行에 障礙를 招來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構造的缺損의 代表的인 境遇는 첫째, 한부모가족(one-parent family 혹은 single-parent family)으로서 父子家族(motherless family)과 母子家族(fatherless family)을 들 수 있고 둘째, 子女만으로 構成된 家族을 들 수 있다. 一般的으로 한부모가족이 發生하는 原因은 私生出生(out-of-wedlock) 이거나

離婚, 別居, 遺棄, 父母中 한편의 投獄, 精神病院에의 入院, 失業등에 起因하는데, ²⁰⁾ 특히 母子家族에 對한 分類를 體系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不在의 期間에 따라서 一時的不在 (temporary absence) 와 永久的不在 (permanent absence) 로 區分될 수 있으며 둘째, 分離의 (separation) 量 (amount) 과 程度에 따라, 그리고 세번째로는 父不在의 原因에 따라 分類가 可能하다. 이 原因別 分類에는 社會的으로 認可된 (socially sanctioned) 原因 - 父가 軍복무나 事業 및 死亡으로 因한 不在일 境遇 - 과 社會的으로 認可되지 못한 (socially disapproval) 原因 - 父와의 離婚, 別居, 父의 家族遺棄 및 父가 범죄나 精神病으로 監獄에 投獄되거나 施設에 收容된 境遇 - 으로 區分할 수 있다. ²¹⁾ 우리나라의 母子保護施設 收容家族의 原因들로는 父의 戰死, 病死, 事故死, 父와의 離婚, 未婚母 등이었다. ²²⁾

이러한 母子家族에 對해 다른 先進諸國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母子福祉法이 制定되지 않아 母子家族에 對한 充分한 保護措置는 물론 精確한 公式的인 定義마저 不在한 實情이다. 단지 兒童福利法 第3條에서 兒童福利施設에 母子保護施設을 包含시켰으며, 兒童福利法施行令 第2條 8項에 母子保護施設을 規定하고 이에 따라 마련된 아동복지시설기준령 第8章에서 母子保護施設의 基準이 規定되어 있고 ²³⁾ 1972년에 사단법인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가 主動이 되어 母子福祉法 草案을 作成했을 뿐이다. ²⁴⁾ 이 母子福祉法草案에서 말하는 要保護母子家族이란 父가 永久的으로 혹은 一時的으로 不在한 境遇뿐만 아니라, 父가 家族과 함께 있더라도 扶養者로서의 役割을 할 수 없는 등의 實質的인 諸狀況 - 夫가 心身障礙 또는 疾病으로 因해 長期間 扶養을 못받고 있는 母子, 父의 失職으로 因해 扶養을 못받고 있는 母子, 其他 家庭福祉機關에서 도움을 必要가 있다고 인정되는 母子 等 - 에 對한 家族까지를 包含하는 包括的인 概念으로 定義했다. ²⁵⁾

要保護母子家族에 對한 이런 包括的인 概念定義와는 달리 實際調査에서 使用된 母子家族에 對한 概念規定은 이보다 훨씬 단순했다. 예를들면, 保健社會部가 1979년에 「女性世帶主 家口實態에 관한 調査」에서 使用한 “女性世帶主 家口”란 “實質的으로 家口員의 生計責任이나 家口代表와는 相關없이 住民登錄附上에 世帶主가 女性인 家口” ²⁶⁾ 로 定義하여 調査하였다. 또한 1975년의 總

人口調査要領에서 使用된 母子家口의 概念은 女性家口라는 말로 대치하고, 이에 對한 規定으로서 “戶主와 世帶主와는 相關없이 家口員의 生計를 實質적으로 責任지고 그 家口를 代表하는 者가 女性인 家口”²⁷⁾로 定義하여 調査하였다.

이와같이 우리나라는 母子家口에 對한 뚜렷한 定義가 公式적으로 規定되지 않은 理由로 類似한 概念들이 調査實施의 基礎概念으로 使用되었음을 볼 수 있다. 一般的으로 要保護母子家庭이란 母子院에 收容된 母子家庭뿐만 아니라, 母子院에 收容되지 않는 生活保護法上의 居宅救護를 받는 母子家庭까지를 包含하는 概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本論文에서 研究하고자 하는 要保護母子家庭에 對한 概念定義는 위의 一般的인 概念定義보다 더 좁혀서 「生活保護法上의 居宅救護를 받는 母子世帶를 除外한 서울所在 社會복지법인 母子院에서 生活保護法上의 施設保護를 받고 있는 家族으로서, 母의 연령이 31~49歲이고 만 15歲以下의 子女 둘 以上을 保護하고 있는 家族」으로 操作的 定義하고자 한다.

2. 役割의 概念

役割(role)이란 術語는 本來 劇場(演劇)에서 빌려온 것이지만 主로 社會組織內에서 社會成員의 役割을 規定하는 社會學者의 研究에 使用되는 用語로서,²⁸⁾ Neiman과 Hughes가 役割概念을 처음으로 使用한 以後로 이에 관한 文獻은 1900~1950年代에 걸쳐 많은 發展이 있었다.²⁹⁾ 예를 들면 1934年에 Moreno는 精神治療의 한 道具로서 “역할놀이(role playing)”라는 概念을 使用했고, 1943年에 T.R.Sarbin은 役割實行(role enactment)이라는 用語로 行爲를 分析했다.³⁰⁾ 그 外에도 N.A.Cameron(1947)과 T.M.Newcomb(1950)가 發展시켰으며, 여러 學者들이 役割概念을 心理學과 社會科學을 連結하는 概念으로 보았다.³¹⁾ 우리나라에서는 1974年에 오인환, George·Won, 이상희 등이 共著로 나름의 독특한 準거를 가지고 諸學者의 役割概念을 體系的으로 分析·整理했을 뿐³²⁾ 理論上의 進展은 없는 實情이다.

Neiman과 Hughes의 말을 빌리면, 役割에 對한 概念規定은 學者에 따라 다르며 이렇다고 할만한 通說的인 概念規定이 되어 있지 않은 實情이라고 한다. 그러나 役割概念은 一般的으로 첫째, 社會化 過程의 基本要素로서 둘째, 文化類

型 (cultural pattern)으로서 세제, 社會的 規範 (social norm)으로서 네제, 行爲 (behavior)와 같은 意味로서 다섯제, 어떤 特定集團에 參與함으로써 規定되는 것으로서의 役割 등 5個 視角으로 分類가 可能하다. 33)

社會事業에서는 役割概念의 行動的側面을 強調하는데, 이와 관련된 諸學者의 役割概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H.H.Perlman은 役割概念을 어떤 사람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과 관련하여 遂行하는 地位 (Position)나 機能으로 이루어진 그 사람의 組織化된 行動類型 혹은 行動樣式으로 定義했고 34) 둘째, Atherton C.R. Sandra T Mitchell, Edna B.Schien은 주어진 社會環境속에서 個人이나 그 社會의 行動目標와 관련하여 어떤 個人에게 期待되는 一連의 行動 (行動群)을 意味한다고 보았으며 35) 셋째, Ralph H.Turner는 役割이란 일정 行爲者의 特徵的인 行動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關係와 分離되어 理解될 수 없다고 했다. 36) 네째로, Francis J. Turner는 役割이란 特定の 地位所有者가 상대편 地位所有者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how he should act)를 말한다고 했다. 37)

이러한 役割概念보다는 좀더 包括적으로 Neal.Gross와 Ward S.Mason, A.W.McEachern은 여러 役割概念에 대한 諸定義를 모아서 세 범주로 分類했는데 첫째는, 役割을 規範的 (normative) 文化類型으로 보는 것으로서 當爲 (should)의 次元에 該當되는 것이고 둘째는, 特定 狀況에 對한 그 個人의 指向 (orientation) 혹은 規定 (definition)으로 보는 것이며 셋째는, 社會的 地位를 가진 行爲者의 行動이 바로 役割이라고 보는 것 등이다. 38) 本研究에서 다룬 役割概念은 “ 規範的 次元의 行動的 側面을 強調하는 役割 ” 概念으로 規定하고자 한다.

그러나 役割概念에 對한 좀 더 分明하고 具體的인 理解를 위해서는 役割概念을 몇가지 次元으로 分析하여 觀察하고, 各 次元內의 重要要素를 選定하여 本研究에 必要한 役割概念을 明確히 하는 것이 必要하다. 이를위해 오인환과 George · Won 및 이상희가 分類한 役割概念의 네가지 次元을 살펴보면, 첫째로 “ 態度 또는 意圖하는 行爲 (attitude and intended behavior) ”의 次元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立場이 있는데 그 하나는 役割을 態度 또는 意圖하고 있는 行動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役割을 實際로 나타난 行動으로 보는

것이다.³⁹⁾ 두번째는 “누구에 의해 期待되느냐 (expected by whom)”의 次元으로서 이는 役割規定者의 問題를 말한다. 세번째 次元은 “누구에게 期待되느냐 (of whom occupying what position)”의 次元으로 役割遂行者의 問題를 말하며, 마지막 네번째 次元은 “어떤 狀況에서이냐 (under what circumstance)”의 次元을 들 수 있다.⁴⁰⁾ (表 I 參照)

<表 I> 役割概念의 次元 (Dimension)

태도 또는 행위 (attitude or expected behavior)	役割規定者 (by whom)	役割行爲者 (of whom)	상 황 (under what circumstance)
태도 또는 의도 하는 행위	추상적 실체 (diffuse entity) ↓ ↑ 구체적 실체 (specific entity)	모든 사람 ↓ 특정한 사람	모든 상황 ↑ 특정한 상황

* 자료: 오인환, George · Won, 이상희, *op.cit.*, 35.

지금까지 살펴본 役割概念을 包括하여 本研究에서 使用하고자 하는 役割에 對한 概念은 “特定 地位의 所有者가 相對地位 (counter position) 所有者에게 期待하는 規範的 次元의 行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를 좀더 具體的으로 家族이라는 狀況的 側面과 관련지어 記述하면, “家族成員間의 相互作用에 있어서 特定 家族成員에 對해 다른 家族成員들이 期待하는 規範的 次元의 行動”으로 定義할 수 있다.

3. 役割概念의 基本的 要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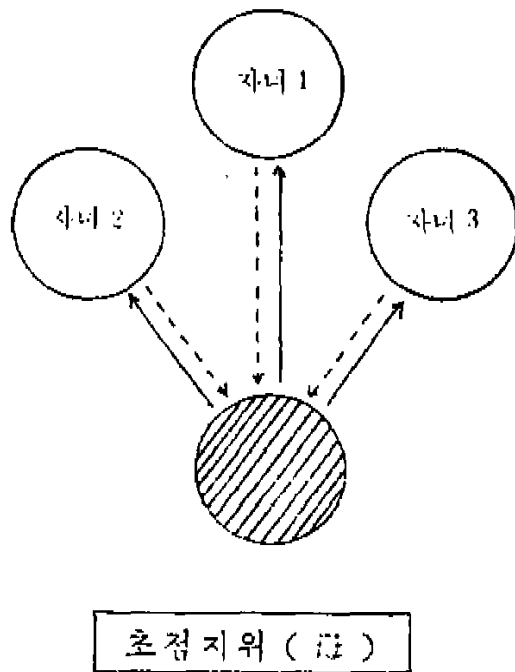
가. 地 位 (Status or Position)

役割概念을 構成하는 基本的 諸要素-地位 (status or position), 地位群 (position set), 役割期待 (role expectation), 役割遂行 (role performance), 役割群

(role set)⁴¹⁾ - 中の 하나인 地位는 社會的關係라는 體系에 속한 特定 行爲者(actor)의 位置(location)로서 一般的으로 status와 position을 가리키지만 status보다는 position이 더 中立的인 말이다.⁴²⁾

Linton은 地位를 “權利와 義務의 集合體(a collection of rights and duties)”로서⁴³⁾ 연령, 性別, 家族關係 및 既存의 特定 社會集團에의 所屬 등의 네가지 要素들이 地位를 構成한다고 보았다.⁴⁴⁾ 또한 Sarbin에 의하면 地位란 “權利와 義務의 體系(a system of rights and duties)”⁴⁵⁾ 로 보고 이는 關係的概念(relational concept)이기 때문에 社會事業에서의 個別社會事業家(case worker)에게 강한 含意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⁴⁶⁾ 여기서 行爲者는 自己가 속한 社會體系의 特定 部門들에 대해 알고 각 地位에 對한 義務, 特權, 權利 등을 알때 割當된 役割을 보다 잘 遂行할 수 있는 것 같이⁴⁷⁾ 地位와 役割과는 不可分の 相互密接한 概念이다. 그러므로 家族의 役割機能을 分析하기 위해서는 이 地位에 관한 分析側面들을 考察에 必 必要가 있다. 이에 關係 N.Gross, W.S.Mason 및 A.W.McEachern은 役割分析時 地位의 關係的側面(relational specification)과 狀況的側面(situational specification)을 考慮해야 한다고 했다.

關係的側面이란 하나의 地位는 그 地位體系 혹은 地位網(position network)의 한 部分이거나 要素이며, 하나 以上の 다른 地位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는 하나의 焦點地位(focal position)에 하나의 相對地位(counter position)가 있다고 보는 二元모델(dyad model), 하나의 焦點地位에 여러개의 相對地位가 있다고 보는 中心모델(position-Centric model), 相對地位間의 相互作用 및 相互依存性의 考察을 可能케 하는 體系모델(systems model), 體系모델과 같으나 垂直的關係의 地位를 나타내주는 位階的體系모델(hierarchical system model), 하나의 體系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보다 큰 體系間의 關係까지 살필수 있는 包括的인 多元的體系모델(multiple system model) 등의 5個로 分離해 볼 수 있다.⁴⁸⁾ 本研究에서는 二元모델(dyad model)의 概念을 中心으로 하되 母와 子女間의 쌍방의 相互作用의 存在를 認定하여 地位와 관련된 役割期待 및 役割遂行의 測定時에 쌍방 모두의 側面을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本研究와 관련된 關係的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圖1>).



※ 여기서 ①(→)은 母가 子女에 對해 갖는 役割期待와 役割遂行을 말하고, ②(---)는 子女가 母에 對해 갖는 役割期待와 役割遂行을 말한다.

<圖 I> 關係的모델

狀況的側面이란 社會體系의 領域選定에 관한 問題로서 그 地位가 研究되어야 할 狀況(situation)의 境界를 意味한다.⁴⁹⁾ 예를들면 全體社會라든가 企業의 組織體系라든가 혹은 學校體系나 家族體系를 말한다.

結局, 地位란 役割概念을 構成하는 要素들 中の 하나로서 役割分析時 중요한 하나의 側面이다.

나. 役割期待 (Role Expectation)

役割期待의 概念은 役割遂行(role performance)이라는 概念과 함께 特定 社會體系의 役割機能을 알아 볼 수 있는 主要한 概念이면서, 社會構造와 社會行動 사이를 概念的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Sarbin에 의하면, 特定の 地位所有者에게 期待된 行動 혹은 質(behavior or qualities)로 언급한 반면⁵⁰⁾ Sarbin과 Allen이 共同으로 쓴 책에서의 役割期待에 관한 定義는 이보다 좀 더 具體的이다. 그들은 役割期待란 特定の 地位를 占有하고 있는 사람이 그의 보완적 役割과 관련하여 權利와 義務의 適切한 行動을 具體化한 認識의 集

合體 즉, 信念 (belief), 主觀的 可能性, 知識要素 (elements of knowledge) 로
 及했다.⁵¹⁾ 이들은 또한 役割期待의 內容은 行動을 위한 指針 以上으로서 自
 信이나 他人에 의해 遂行토록 期待된 어떤 行動뿐만 아니라 그런 行動을 特
 定の 方法으로 (즉, 質的인 要素로서, 예 들 들면 치안관사에게 要求되는 期待는 公
 正성과 正直 등이다) 遂行할 것에 對한 期待를 包含한다고 언급하고 있다.⁵²⁾
 여기서 自己自信에 의해 遂行토록 期待된 役割期待를 主觀的 役割期待, 他人으로
 부터 期待되는 役割期待를 客觀的 役割期待라고 한다.⁵³⁾

役割機能을 分析하려면 그 集團이 特定地位所有者에 대해 갖고 있는 役割期
 待를 끌어내야 하는데 이에 適用될 수 있는 세가지 범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焦點地位와 하나의 相對地位의 關係에 適用된 一群의 期待인 役割部門 (ro-
 le sectors)間的 分化이며 둘째, 權利 (rights)와 義務間的 分化이고, 셋째, 地
 位所有者의 “해야할 것 (should do)”과 “있어야 할 것” (should be) ”을
 區分함으로써 可能하다고 보는 行爲와 屬性間的 分化이다.⁵⁴⁾ 本 研究에서 使
 用하고자 하는 役割期待는 “特定 地位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相對地位者에
 對하여 그의 權利에 해당되는 規範的行動 次元의 客觀的期待들을 具體化한 認
 識의 集合體”로 定義하고자 한다.

다. 役割遂行 (Role Performance)

役割遂行 (role performance)이란 주어진 社會的位階에 있는 個人이 어떻게 行
 動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등의 樣相⁵⁵⁾ 즉, 自信이나 他人에 의해 自信에게
 賦課된 役割期待를 實質的인 明確한 行動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
 다. Bruce J. Biddle과 Edwin J. Thomas는 家族體系內에서의 어떤 사람의 役
 割遂行은 그와 및 다른 家族成員과의 關係의 機能으로 볼 수 있으므로 役割
 遂行의 分析은 主要한 各 成員과의 關係樣相을 通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
 았다.⁵⁶⁾

本 研究에서의 役割遂行의 測定은 特定地位所有者가 相對地位所有者에게 期待
 한 役割期待에 對해 相對地位所有者의 期待實行程度를 관찰, 판단한 것에 根據
 했다. 그러므로 測定된 役割遂行은 그 本質上 特定 地位所有者의 客觀的觀察
 과 評價만이 아니라, 이 外에 그의 主觀的期待와 判斷을 包含하여 이루어진 것
 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役割遂行上の 問題와 관련하여, 役割期待와 役割遂行間의 差異는 여러 가지 問題狀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問題狀況으로는 첫째, 自信의 役割期待가 다른 사람의 役割期待와 兩立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役割葛藤(role conflict)이 있고⁵⁷⁾ 둘째, 個人들이 여러개의 社會的地位를 갖게 됨에 따라서 兩立되지 않는 役割에 直面할 때 그 個人이 主觀적으로 느끼는 緊張感으로서⁵⁸⁾ 個人에게 緊張感, 不安, 걱정, 情緒的萎縮 등으로 表現되는 役割緊張(role strain)이 있으며⁵⁹⁾ 셋째, 特定の 社會組織이나 地位에 包含되는 權利와 義務에 對한 役割期待들이 明確하지 않은 境遇인 役割模糊(role ambiguity) 등이 있을 수 있다.

以上の 諸問題狀況은 役割期待上の 問題와 密接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結局, 家族의 境遇에서도 役割期待와 役割遂行의 問題가 家族間의 緊張이나 葛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役割期待에 따른 役割遂行의 一致程度는 家族의 診斷 특히 家族內 特定領域에서의 役割機能程度를 測定할 수 있게 한다.

4. 分析을 위한 틀(framework)

本 研究의 調査領域인 役割領域에 對한 選定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子女指導 및 教育側面에 該當되는 領域이고 둘째는, 家事活動側面에 該當되는 領域이고 셋째로는, 情緒的側面에 該當되는 領域이다. 이러한 세영역의 選定은 우선적으로 앞에서 言及한 母字家族이 가진 機能上的 問題들을 참고하였고, 2次的으로는 이은식이 「韓國家族의 役割構造에 관한 研究」에서 使用한 6個 役割領域中⁵⁰⁾ 母子家族의 機能的問題와 관계있는 子女指導 및 教育 領域과 家事活動 領域의 두개 領域을 選定했고, Alice L.Voilnd의 「家族診斷(Family Casework Diagnosis)」⁶¹⁾ 中에서 情緒的領域을 選定한 것이다.

各 役割領域別 測定을 위한 諸側面 및 그 選定背景은 다음과 같다. 첫째 子女指導 및 教育 領域에 대한 役割機能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子女의 言語習慣, 子女의 學習, 子女의 交友關係, 子女의 議論相對 등의 네가지 側面에 對한 分析을 했는데, 이는 이은식의 研究에서 使用된 8個 項目中 母子家族의 研究

에 必要한 4個의 項目을 選定한 것이다. 둘째, 家事活動 領域에서의 母와 子女間의 役割機能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부자리 整頓, 집안청소, 간단한 修理, 日常의 支出 등의 4個 側面에 대한 分析을 했는데, 이 또한 이은식의 研究에서 使用된 項目을 참조한 것이다.⁶²⁾ 셋째, 情緒的 領域에서의 役割機能의 狀態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살피는 마음, 記念日에 대한 記憶, 支持와 激勵, 오락시간의 所有 等の 4個 側面에 對한 分析을 했는데, 이는 Alice L. Voiland 및 그녀의 동료들이 言及한 相互 情緒的慾求의 滿足(reciprocity in gratification of emotional need)을 바탕으로 情緒的安定的 한 要素로 언급한 “도움이 되는 關心(helpful concern)”을 選定⁶³⁾ 하여 이를 세 項目으로 具體化시킨 것이다. 오락시간의 所有는 이 要素가 情緒的紐帶를 強化시킬 수 있다는 M.Ross의 언급에 根據한 것이다.

本 研究은 이러한 役割領域 및 側面을 바탕으로 母가 子女에게 期待하는 側面과 子女가 母에게 期待하는 側面의 두 側面에서 役割期待와 役割遂行의 程度 및 이 兩者間의 差異를 測定했다. 本 研究에서 分析될 諸役割領域을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II>).

<表II> 役割의 分析領域

영역 측면수	자녀지도 및 교육	가사 활동	정서적 활동
1	자녀의 언어습관	이부자리 정돈	보살피는 마음
2	子女의 학습지도	집안청소	기념일의 기억
3	子女의 교우관계	간단한 수리	지지와 격려
4	子女의 의논상대	일상의 지출	오락시간의 所有

Ⅲ. 要保護母子家族의 役割機能分析

1. 調査對象者의 一般的 特性

母의 연령별 分布는 30代 후반이 56.3%(18)로 가장 많았고, 學歷別分布는 대부분이 國卒(46.9%)이나 中卒(40.6%)로 나타나 教育程度와 經濟安定의 상관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볼때 母子家族의 經濟的인 自立의 問題解決이 어려울 것임을 推測할 수 있다. 또한 子女數는 3名이 50%(16) 2名이 34.3%(11)로 나타나 平均的인 子女를 갖고 있었지만 가장 큰 자녀의 연령이 13歲가 40.6%를 차지하고 있어 母子家庭內에 경제적 보조를 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母의 93.7%가 직장에 나가고 있었는데 主로 막노동, 잡상인, 파출부, 도배, 말단직원 등이었다.

母子院에서 保護받고 있는 要保護母子家族의 原因은(父喪失의 原因) 死亡이 93.7%(30), 失 6.3%(2)로 나타났고, 死亡에 따른 原因別分布는 病死가 76.7%(23), 事故死가 23.3%(7)로 나타났다. 또한 父와의 死別期間別 分布에서는 程度의 차이는 있으나 1年以下에서 9년까지 多樣하게 나타나 死別期間의 長短과는 相關없이 生活에의 定着을 못하고 施設保護를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역시 經濟的 自立의 어려움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入所期間도 길어서 2~3년이 53.1%(17)였고 1年 미만은 15.6%(5)에 불과했으며, 退所에 對한 態度도 退所後 “많은 어려움을 느낄것 같다”(65%)와 “두렵다(35%)”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현재의 入所期間에 대해서는 짧다라는 見解가 100%로 나타났고 84.4%가 5~6년으로 入所期間을 연장해 줄 것을 願하고 있었다.

2. 領域別 役割期待와 役割遂行

가. 子女指導 및 教育領域

이 領域에서 子女가 母에 期待하는 程度는 交友關係를 除外한 3個側面 모두에서 「아주높다(◎)」로 나타났으나, 子女의 期待에 對한 母의 役割遂行의 程度는 「아주높다(◎)」, 「높다(○)」, 「보통이다(△)」의 세종류로 나타났

다. 期待와 遂行間의 差異는 學習指導面에서 가장 커서 (-1.62, 評價數値로는 -9) 役割期待에 따른 役割遂行을 가장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母는 子女에게 學習側面에 대해 가장 큰 期待를 갖고 있었고(4.89) 言語習慣에 대해서는 가장 적은 期待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4.61), 母는 子女에 대해 子女들이 交友關係나 言語習慣 및 議論相對 側面보다 子女들의 學校成績이나 공부에 더 많은 期待를 갖고 있었다.

나. 家事活動 領域

이 領域에서 子女가 母에게 期待하는 程度는 “日常의 支出” 側面이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에 집안청소는 2.94(△), 간단한 修理는 3.5(○)로 나타났는데 이는 子女들이 이부자리 정돈이나 집안청소에 대해 母의 일로서 보다는 自身들의 일로 생각하는 傾向으로 볼 수 있다.

母가 子女에게 期待하는 役割期待의 程度는 子女가 母에게 期待하는 程度보다 全般的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부자리 정돈에 대해 母가 子女에게 期待하는 程度(4.44)가 子女가 母에게 期待하는 程度(2.6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이 높은 期待에 대해 子女들은 期待를 上廻할 만큼 役割遂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72, 0.09)

다. 情緒的活動 領域

이 領域에서 子女가 母에게 期待하는 側面中 役割期待가 가장 높은 側面은 「지지와 격려」 側面(4.84)이었으나, 役割期待와 役割遂行의 差異는 오락시간의 所有側面을 除外한 세측면에서 비슷했다(-0.06, -0.32, -0.43, 評價數値로는 -1, -2, -3). 그러나 오락시간 所有 側面에서는 그 差異가 -2.25나 되었는데 이는 母의 職業上의 特性으로 인해 子女들과 함께 할 수 있는 時間이 부족함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母가 子女에게 갖는 役割期待에 대해 期待와 遂行間의 差異는 記念日에 대한 記憶側面이 가장 적었고(-0.47, -3), 나머지 세측면은 모두 評價數値 ~5 정도로 나타났다. 즉, 情緒活動領域에서는 오락시간의 所有側面을 除外하고는 두드러지게 期待와 遂行間의 差異가 크게 나타나는 側面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情緒活動領域에서의 援助方向을 示唆해 주고 있다.

以上の 세 役割領域을 비교해 보건데 子女指導 및 教育 領域이 期待와 遂

行間の 差異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施設保護母子家族에 대한 援助를 하는 境遇, 子女指導 및 教育 領域에 제일 우선을 두고 그 다음에 情緒的 領域에 대한 援助를 하는 것이 役割期待와 役割遂行間의 差異를 줄일 수 있어 家族의 機能的 側面의 効果적인 問題解決 및 豫防을 할 수 있는 根據를 示唆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表Ⅲ> 側面別 役割期待와 役割遂行

N = 32

영역 측면	자녀지도 및 교육				가사 활동				정서적 활동			
	언어 습관	학습 지도	교우 관계	의논 상대	이부 자리 정돈	집안 청소	간단한 수리	일상의 지출	보살피는 마음	기념일의 기억	지지와 격려	오락 시간
역할기대	◎ (◎)	◎ (◎)	○ (◎)	◎ (◎)	△ (◎)	△ (◎)	○ (○)	◎ (◎)	◎ (◎)	◎ (○)	◎ (◎)	◎ (◎)
역할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GAP	-3 (-6)	-9 (-10)	-6 (-4)	-6 (-4)	+4 (+1)	+4 (-1)	-2 (-4)	-1 (-1)	-1 (-5)	-2 (-3)	-3 (-5)	-12 (-5)

<表Ⅳ> 施設保護母子家族의 役割期待와 役割遂行 (綜合)

N = 32

영역	역할기대 (20)	역할수행 (20)	GAP
자녀지도및교육	18.03 (18.88) ◎ (◎)	13.30 (14.39) △ (○)	-4.73 (-4.48) -6 (-6)
가사 활동	14.13 (17.5) ○ (◎)	15.09 (16.75) ○ (○)	0.97 (-0.75) +2 (-1)
정서적 활동	17.97 (16.09) ◎ (○)	15.06 (14.59) ○ (○)	-2.91 (-1.5) -4 (-2)

3. 諸變數別 役割期待와 役割遂行

가. 母의 연령에 따른 役割期待와 役割遂行

母의 연령이 30代이건 40代이건 役割期待程度는 家事活動 領域에서 子女가 母에게 期待하는 側面만 「 높다(○) 」로 나타났을 뿐, 다른 領域에서는 「 아주높다(◎) 」로 나타났다. 그러나 役割遂行 側面에서는 다소의 差異가 있어 子女指導 및 敎育 領域에서 가장 役割期待에 따른 役割遂行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AP의 評價數值가 30代에서는 -6과 -6, 40代에서는 -7과 -6으로 나타남).

나. 母의 學歷에 따른 役割期待와 役割遂行

國卒以下인 母는 子女들이 自信에게 期待하는 程度에 대해 세 役割領域 모두에서 中卒以上인 母보다 役割遂行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국졸이하: -4.63, 1, -0.76, 中卒以上: -4.86, 0.94, -3.07), 특히 情緒的活動 領域에서 役割期待와 役割遂行間의 學歷別差異(GAP)가 다른 두 領域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다(-0.76과 -3.07로서 그 差異는 2.91이다). 그러므로 學歷이 높은(中卒以上) 母를 가진 母子家族이 학력이 낮은(國卒以下) 母를 가진 母子家族보다 役割期待와 遂行에 따른 差異가 커서 家族內 機能上的 葛藤 狀況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情緒的 役割領域에서 그러하므로 學歷이 높은 母를 가진 施設保護母子家族에 대해서는 情緒的 側面에서의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하리라고 본다.

다. 子女數에 따른 役割期待와 役割遂行

子女가 母에 對해 갖는 役割期待는 세영역 모두에서 子女數가 적은 가족(2~3名의 子女를 가진 家族)이 子女數가 많은 家族(4~5名의 子女를 가진 家族)보다 役割期待의 程度가 컸고, 이에 따른 役割遂行으로 인한 差異(GAP)는 情緒活動領域을 除外하고 거의 같았다(GAP: 評價數值로는 -6과 +6+2와 -2, -4와 -3).

母가 子女에게 갖는 役割期待의 程度는 子女數와 相關없이 子女指導 및 敎育領域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18.89, 18.8), 이에 따라 役割期待와 役割遂行間의 差異도 子女指導 및 敎育 領域에서 가장 컸다(-4.49, -5.1로 評價數值로는 -6과 -7).

라. 父와의 死別期間에 따른 役割期待와 役割遂行

父와의 死別期間이 짧을수록 子女는 母에 대해 子女指導 및 教育 領域과 情緒的活動 領域에서의 役割期待 程度는 크게 나타났고(子女指導 및 教育領域 - 3年미만: 19.22, 3~5年: 16.77, 5年以上: 16.6, 情緒的活動 領域 - 3年미만: 18.56, 3~5年: 17.92, 5年以上: 17.9), 役割期待와 役割遂行간의 差異도 크게 나타났다(子女指導 및 教育領域 - 3年미만: -5.5, 3~5年: -4.62, 5年以上: 4.2, 情緒的活動 領域 - 3年미만: -3.45, 3~5年: -3.15, 5年以上: -2.5). 그러므로 父와의 死別期間이 긴 母子家族보다는 짧은 母子家族에 대해 子女指導 및 教育領域과 情緒活動 領域에서 子女가 母에 對해 갖는 役割期待를 충족시키거나 子女의 期待에 따른 母의 役割遂行을 촉진시킬 수 있는 方向으로 援助가 주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마. 退所에 대한 態度別 役割期待와 役割遂行

退所에 對한 두려움의 程度는 母와 子女 모두에 있어서 두려움이 큰 家族(“두렵다” 라는 項目에 응답한 家族)이 적은 家族(“어려울것 같다” 라는 項目에 응답한 家族)보다 세 役割領域 모두에서 役割期待와 役割遂行간의 差異(GAP)가 크게 나타났다(“두렵다” - 子女指導 및 教育 領域: -6.13, -5.86, 家事活動領域: 0.35, -1.82, 情緒活動領域: -2.19, -5.36, “어려울것 같다” - 子女指導 및 教育領域: -4, -3.76, 家事活動領域: 1.24, 0.19, 情緒活動領域: -1.29, 0.47). 또한 앞에서 살펴본 대로 施設에서 保護받고 있는 母子家族은 3年이라는 最大 入所期間에 대해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5~6年으로 入所期間을 연장해 줄 것에 대한 慾求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退所에 대한 두려움으로 因한 家族員간의 葛藤狀況의 심화를 막기 위한 對策이 必要하다. 즉, 母와 子女간의 役割期待와 役割遂行간의 差異(GAP)로 因한 葛藤과 不適應狀態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退所에 대한 두려움을 적게 갖도록 하는 方向으로 支援이 이루어져야 하되, 이의 한 對策으로 母子 保護施設 收容家族의 入所期間을 연장하는 對策의 마련 또한 必要하리라고 본다.

以上の 여러 變數別 役割期待와 役割遂行을 綜合한 것이 <表V>에 나타나 있다.

IV. 結 論

本 研究는 家族福祉의 觀點에서 우리나라 要保護母子家族의 家族內 機能的問題에 대한 診斷을 위해서 社會科學理論의 하나인 役割理論(role theory)을 사용하여, 特定 領域에 대한 役割期待와 役割遂行의 程度 및 이 兩者間의 相違狀態를 測定해 봄으로써 要保護母子家族의 代表的인 경우인 施設保護母子家族의 役割機能의 狀態를 分析한 것이다.

要保護母子家族이 當面하고 있는 가장 큰 問題는 누구나 經濟的인 問題라고 생각하고 이 經濟的인 것만 解決되면 問題가 없어질 것이라는 一般的인 思考 傾向에서, 本 研究者는 經濟的인 問題 보다도 母子家族이라는 缺損家族에서 일어날 수 있는 機能的 側面의 問題의 重要性을 고려하여 母子家族의 機能的인 問題 接近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役割概念의 諸要素中에서도 役割期待(role expectation)와 役割遂行(role performance)의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는 役割期待와 役割遂行의 差異程度를 알아봄으로써 그 家族의 役割期待와 遂行에 따른 葛藤程度를 測定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測定의 結果 施設保護母子家族이 어느 측면에서 얼마만큼의 問題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능했다. 과학적 診斷이나 分析없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해서 보다 精確한 分析과 診斷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들 施設保護母子家族에 대한 보다 効果적이고 問題의 淸點을 맞춘 對策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調査結果와 이에 따른 示唆 및 提案을 바탕으로 하여 社會福祉의 한 對象인 施設保護母子家族에 대한 구체적인 社會事業的 接近이 이루어 질때, 施設에서 保護받고 있는 各 母子家族의 自立의 촉진뿐만 아니라 社會的으로는 家族解體(family disorganization)로 인한 社會解體(social disorganization)을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社會的 統合(social integration)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本 研究는 施設保護母子家族에 대한 社會事業的 接近을 위한 具體的인 內容과 전략을 提示하지는 않았다. 단지 施設保護母子家族이 社會福祉 혹은 社會事業의 主要 對象인 만큼, 이들이 가진 役割機能 側面中 어느 側面에서 더욱 援助를 必要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 援助를 必要로 하

는 부문에 社會福祉나 社會事業의 接近方向이 돌러져야 한다는 根據를 提示한 것에 불과하다. 本 研究를 토대로 一般家族이나 居宅救護對象家族 혹은 一般 母子家族과의 비교연구 및 具體的인 社會事業的 원조전략에 관한 研究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註)

1. 張仁協, 「社會福祉概論」 (서울: 韓國社會開發研究院, 1982), p.168.
2. 國務總理企劃調整室, 「青少年白晝」 (1983), p.332.
3. 保健社會部, 「保健社會統計年報」, 第29會 (1983), pp.174~176 參照.
4. 張仁協, 前揭書, pp.172~173.
5. 송성자, “貧困母子世帶를 위한 Program Model 開發研究,” 「사회복지」, 74 (1982. 9), p.96.
6. 법무부교정국, 「비행소년통계 제 8집」 (서울: 법무부교정국, 1980), p.22.
7. 家族의 構造的 缺損과 機能的 缺損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로는, 장인협, “청소년 가출에 관한 研究,” 「社會福祉研究」, 第5號 (1970). 최경석, “가출 부랑아의 發生原因과 대책,” 「사회복지정책연구」, 제 1집 (1982).
8. H.M. Leyendecker, *Problems and Policy in Public Assistance*, (N.Y.: Haper and Brother, 1955), pp.240~241. 장인협, 前揭書, p.146 에서 再引用.
9. 張仁協, 前揭書, pp.208~217 參照.
10. 社會事業 部門에서 役割概念을 이용한 國內外的 研究로는,
 - 1) 이은주, “家族問題 解決에 있어서 役割理論의 적용에 관한 研究 ”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1)
 - 2) 이은순, “아버지 役割에 관한 父-子女間의 상관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76).
 - 3) 서지윤, “개별사회사업에 있어서 역할이론의 유용성,”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76).
 - 4) 김현숙, “役割理論에 입각한 개별사회사업 사례분석,” 「社會福祉研究論文」, 제 2 집 (1982).
 - 5) 이은식, “韓國家族의 役割構造에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20 (1975).
 - 6) C.R. Atherton, Sandra T. Mitchell and Edna B. Schien, “Locating Points for Intervention,” *Social Casework*, Vol. 52, No.3 (1971)
 - 7) _____, “Using Points for Intervention,” *Social Casework*, Vol. 52, No.4 (1971)

- 8) Wener Boehm, "The Social work Curriculum Study and Its Implication for Family Casework," *Social Casework*, Vol. 40, No. 4 (1959)
- 9) Carol Meyer, "Quest for a Broader Base for Family Diagnosis," *Social Casework*, Vol. 40 (1959).
- 10) H. H. Perlman, *Persona: Social Role and Person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 11) Heberts Streaan, "The Application of Role Theory to Social Casework," H. Streaan(ed.), *Social Casework: Theories in Action* (1971).
11. 이효재, 「家族과 社會」(서울:진명출판사, 1979), p.298.
12. 韓國社會福祉協議會, 「사회복지기관총람」(1982), p.125.
13. 이관우, 「新調査方法論」(서울:형설출판사, 1981), p.132.
14. 보건사회부, 「女性世帶主家口 實態調査 分析報告書」(1979), p.132.
보건사회부, 「要保護女性の 福祉向上을 위한 研究」(1977), p.55.
15. 최의선, "夫婦의 役割期待와 그 適應에 관한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79)
16. 이은순, "아버지 役割에 관한 父-子女間의 상관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73)
17. 各 領域別 役割期待와 役割遂行의 程度는 最高値가 20 점이고, 最低値는 4 점이므로 $20 - 4 = 16$ 이고, 各 側面에서의 役割期待와 役割遂行의 最高値는 5 점이고 最低値는 1 점이므로 $5 - 1 = 4$ 이다.
18. 이효재, 前掲書, p.11.
19. 張仁嶽, 「케이스워크-이론과 실제」(서울:남산당, 1975), p.119.
20. Helen A. Mendes, "Single-Parent Families: A Typology of Life Style," *Social Work* (1979. 5), p.193.
21. Elizabeth Herzog and Cecilia E. Sudia, *Boys in Fatherless Families* (Washington: DHEW, 1971), pp.28~29.
22.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韓國의 社會福祉(Social Welfare in Korea)」(1979), p.29.
23. 上掲書, p.94.
24. 사단법인 부녀보호사업전국연합회, 「부녀복지사업관계자료」(1975.12)
25. 上掲書, pp.79~81 참조.
26. 보건사회부, (1979), 前掲書, p.1.
27. 上掲書, p.2.
28. 이은순, 前掲書, p.6.
29. H. S. Streaan, "Role Theory," in Francis J. Turner (ed.), *Social Work Treatment - Interlocking Theoretical Approaches* (N.Y.: Free Press, 1974), p.314.

30. T.R. Sarbin & R.H. Turner, "Role" in Silis, David. L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13 (U.S.A : Free Press, 1968), p.547.
31. *Ibid.*, p.546.
32. 오인환, George. Won, 이상희, "役割概念 (Role Concept) 에 관한 研究," 「한국사회학」, 제 9집 (1974).
33. Francis J. Turner (ed.), *op. cit.*, p. 315.
34. *Ibid.*, p.314.
35. Atherton C. R, Sandra T. Mitchell and Edna B. Schien, "Locating Points for Intervention," *Social Work*, Vol. 52, No.3 (1971), p.133.
36. Ralph H. Turner, *Family Interaction* (N.Y. :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1970), p.214.
37. Francis J. Turner, *op. cit.*, p.314.
38. Gross. Neal, W. S. Mason, and A.W. McEachern, *Explorations in Role Analysis* (N.Y:Wiley, 1958), pp.12-13.
39. 오인환, George -Won, 이상희, 前掲書, p.32.
40. 上掲書, p.35.
41. 이은주, 前掲書, pp. 8-13.
42. Gross. Neal, W. S. Mason and and A.W. McEachern, *op. cit.*, p.48.
43. *Ibid.*, p.57.
44. *Ibid.*, p.48.
45. *Ibid.*, p.57.
46. H. S. Streaan, "Role Theory, Role Models and Casework: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Practice Application," *Social Work*, Vol.12 (1968), p.77.
47. T. R. Sarbin, "Role - Psychological Aspects," in Silis, David.L (ed), *op. cit.*, p.547.
48. N. Gross, W. S. Mason and A.W. McEachern, *op. cit.*, pp.49-55 참조.
49. *Ibid.*, p. 56.
50. T. R. Sarbin, *op. cit.*, p.547.
51. T. R. Sarbin & V. L. Allen, "Role Theory," in Gardner Lindzey & Elliot Aronson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I (Reading : Addison -Wesley, 1954), p.497.
52. *Ibid.*, p.498.
53. 이은주, 前掲書, p.10-11.
54. N. Gross, W. S. Mason and A.W. McEachern, *op. cit.*, pp.61-63 참조.
55. 이은주, 前掲書, p. 12.
56. Brace J. Biddle and Edwin J. Thomas (eds.), *Role Theory: Concepts and Research* (N.Y:Wiley, 1966), p. 521.

57. T.R. Sarbin , *op.cit.* , p.51.
58. 김현숙, “ 役割理論에 立脚한 개별사회사업의 事例分析,” 「社會福祉研究論文」, 第2集(1982), p.329.
59. 이은주, 前掲書, p.19.
60. 이은식, “ 한국가족의 役割構造에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20(1975).
61. Alice L. Voiland and associates, *Family Casework Diagnosis* (N.Y. and London : Columbia Univ. Press, 1962).
62. 이은식, 前掲書, pp.156-157.
63. Alice L. Voiland and Associates, *op.cit.* , p.16.